

수신 도내 사회복지시설·단체 대표

(경유)

제목 2023년 1차 ‘사회복지자원봉사 신규인증관리요원 양성교육’ 신청 안내

1. 사회복지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진력하시는 귀 시설·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우리 협의회에서는 「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 제7조(인증관리요원의 위촉 및 업무 등)」에 의거하여 현장에서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을 직접 관리하는 자원봉사관리자들을 대상으로 ‘사회복지자원봉사 신규인증관리요원 양성교육’을 실시하오니, 귀 시설·단체 업무담당자가 교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교육안내

일시	대상	장소	교육비
2023. 3. 9.(목) 14:00 ~ 18:00	시설·단체 종사자(4대보험 가입자) 중 인증관리요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 총 30명	우리 협의회 2층 삼다수홀	회 원 10,000원 비회원 20,000원 (협의회 회비 납부 여부에 따라 구분)

나. 제출서류 : 재직증명서,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(www.4insure.or.kr에서 발급가능)

※ 교육신청 시 본인의 이름이 확인 가능한 서류 발급 후 이메일(jejubokji@hanmail.net)로
사전 제출(서류 미제출시 교육 이수 처리 불가)

다. 신청기간 : 2023. 2. 27.(월) ~ 3. 3.(금)

라. 신청방법 : [우리 협의회 홈페이지(www.jejubokji.net)에서 신청자 본인 아이디로 접속] →
[제주사회복지협의회 ‘교육신청’] → [‘2023년 1차 사회복지자원봉사 신규
인증관리요원 양성교육’ 신청] → [홈페이지 전자결제시스템으로 결제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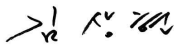
마. 기타사항

- 교육 불참 시 최소 3일 전에 연락해야 환불가능(교육비 환불은 공문으로 요청)
-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규정「제8조(인증관리요원 보수교육 등)」에 의거하여 인증관리
요원은 반드시 3년(36개월)마다 한 번씩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하며, 기한 내 보수교육을 이수
하지 않으면 VMS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‘활동정지’로 변경됨

○ 보수교육 대상자는 양성교육을 신청할 수 없으며, 관리규정「제8조(인증관리요원 보수교육 등)」에 의거하여 보수교육을 듣고 5년 이상이 경과한 인증관리요원은 양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함. 끝.

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장



담당(대리) 강 보 연 복지사업부장  사무처장 전결 
협조자

시 행 제사협 2023 - 300 (2023. 2. 23.) 접 수 ()

우 633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풍남8길 12-1(화북1동 1112-1) / www.jejubokji.net

전 화 (064)726-5786 전 송 (064)702-3383 / jejubokji@hanmail.net / 공개